

일본의 청소년이 안전하게 안심하고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의 정비 등에 관한 법률

1. 시작하며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인터넷과 관련하여 여 러 가지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다. 그 중에는 이 른바 댓글과 관련한 문제와 청소년에게 무방비 로 노출되는 유해정보문제가 대표적인 것이라 고 생각된다. 그 중 인터넷에 무방비로 노출되 어 있는 유해정보문제와 관련하여 일본은 2008 년 6월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고 현재 해당법률 에 대한 일반국민에 대한 의견을 모집하고 있는 중이다.

일본의「청소년이안전하게안심하고인터넷을 이용할수있는환경의정비등에관한법률 은 참의 원에서 2008년 6월 11일에 가결·성립되고, 6 월 18일 공포된 법률(平成20年 법률 제79호)이 다. 同법률은 시행을 공포일로부터 1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는 상 태이다. 현재가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구하는 과정(Public comment절차²)에 있으 며, 시행 후 3년 이내에 검토를 하도록 규정하 고 있다.

이하에서는 해당법률의 개략적인 내용을 법 률의 순서에 따라 총칙, 인터넷청소년유해정보 대책·환경정비추진회의 등, 인터넷의 적절한 이용에 관한 교육 및 계발(啓發)활동의 추진 등, 청소년유해정보필터링서비스의 제공의무 등, 인터넷의 적절한 이용에 관한 활동을 시행하는 민간단체 등의 순서로 살펴본 후, 일본 내에서 지적되고 있는 문제점과 비판의 내용을 살펴보 는 것으로 정리하도록 하겠다.



1) 2008년 11월.

2) 행정의 정책입안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공모하는 제도로서 2005년 6월 행정절차법의 개정에 의해서 신설되었다.



II. 총 칙

1.목적

이 법률은 인터넷에서 청소년유해정보가 유 통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청소년이 인터넷 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능력의 습득에 필요한 조 치를 강구함과 동시에, 청소년유해정보 필터링 소프트웨어의 성능향상 및 이용보급, 그 외 청 소년이 인터넷을 이용해서 청소년유해정보를 열람할 기회를 가능한 한 줄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 등을 강구함으로써 청소년이 안전하 게 안심하고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청소년 의 권리옹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정의

- (1) 이 법률에서 "청소년"은 18세 미만의 자 를 말한다.
- (2) 이 법률에서 "청소년유해정보"는 인터넷 을 이용해서 공중의 열람에 제공되고 있 는 정보로,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현저 하게 저해하는 것을 말하고, 이것의 예로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 i. 범죄 혹은 형벌법령에 저촉하는 행위를 직접적이고 명시적으로 맡거나, 중개하거 나 혹은 유인하거나, 자살을 직접적이고 명시적으로 유인하는 정보
- ii. 사람의 성행위 또는 성기 등의 외설적인 묘사, 그 외 현저히 성욕을 흥분시키거나

자극하는 정보

- iii. 살인, 처형, 학대 등의 장면의 참혹한 묘 사, 그 외 현저히 잔혹한 내용의 정보
- (3) 이 법률에서 "ISP(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 사업자)"는 인터넷에 접속을 가능하게 하 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를 말하다.
- (4) 이 법률에서 "휴대ISP(휴대전화 인터넷접 속서비스제공사업자)"란 휴대전화로부터 인터넷에의 접속을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 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를 말한다.
- (5) 이 법률에서 "청소년유해정보 필터링소프 트웨어"란 인터넷을 이용해서 공중의 열 람에 제공되어 있는 정보를 일정한 기준 에 따라서 선별한 후에, 인터넷을 이용하 는 자인 청소년유해정보의 열람을 제한하 기 위한 프로그램을 말한다.
- (6) 이 법률에서 "청소년유해정보 필터링서비 스"는 인터넷을 이용해서 공중의 열람에 제공되어 있는 정보를 일정한 기준에 따 라서 선별한 후에, 인터넷을 이용하는 자 의 청소년유해정보의 열람을 제한하기 위 한 역할 또는 청소년유해정보 필터링소프 트웨어에 의해서 청소년유해정보의 열람 을 제한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를 당해 청소년유해정보 필터링소프트웨어를 작 동시키는 자에 대해서 인터넷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 (7) 이 법률에서 "특정서버관리자" 란 서버를

터넷을 이용해서 공중이 열람가능 한 상 태로 두고, 이것을 열람할 수 있도록 서비 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3.기본이념

- (1) 청소년자신이 인터넷을 적절히 활용하는 능력을 습득하는 것을 취지로 해서 시행 하여야만 한다.
- (2) 청소년이 인터넷을 이용해서 청소년유해 정보의 열람을 할 기회를 가능한 한 적게 하도록 하는 것을 취지로 시행되어야만 하다.
- (3) 민간에서의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대처가 큰 역할을 담당하고, 국가와 지방공공단 체는 이것을 존중하는 것을 취지로 해서 시행되어야만 한다.

4.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책무

청소년이 안전하게 안심하고 인터넷을 이용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책을 책정하고, 실시 할 책무를 갖는다.

5. 관계사업자의 책무

사업의 특성에 맞추어 청소년이 인터넷을 이 용해서 청소년유해정보의 열람을 할 기회를 가 능한 한 적게 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함과 동시 에, 청소년이 인터넷을 적절히 활용할 능력을

이용해서 타인의 요구에 따른 정보를 인 📗 습득하는데 도움이 되는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 력해야 한다.

6. 보호자의 책무

청소년의 인터넷이용의 상황을 적절히 파악 함과 동시에 인터넷의 이용을 적절히 관리하고, 인터넷을 적절히 활용하는 능력의 습득을 위해 노력하다.

7. 연계협력체제의 정비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관계기관, 청소년의 인터넷이용에 관련한 사업을 시행하는 자 및 관 계하는 활동을 시행하는 민간단체상호간의 연 계협력체제의 정비에 노력해야 한다.

Ⅲ. 인터넷청소년유해정보대책 · 환경정 비추진회의 등

1.인터넷청소년유해정보대책 · 환경정비추진회의

- (1) 내각부에 인터넷청소년유해정보대책·환 경정비추진회의(이하 회의라고한다)를 두 기도 한다.
- (2) 회의는 다음의 사항을 담당하는 것으로 한다. ① 계획을 작성하고, 실시를 추진하는 것 ② ①이 외, 청소년이 안전하게 안심하고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
- (3) 회의는 회장 및 위원으로 구성되는 조직

책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해서 심의하는 것



으로 한다.

- ① 회장은 내각총리대신으로 한다.
- ② 위원은 내각관방장관, 관계행정기관 의 장 및 내각부특명담당대신 그 외 국무 대신 중에서 내각총리대신이 지정하는 자 로 한다.

2.기본계획

- (1) 회의는 청소년이 안전하게 안심하고 인터 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위한 시책에 관한 기본적인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한 다)을 정하도록 한다.
- (2) 기본계획은 다음의 사항에 대해서 정하는 것으로 한다.
 - ① 청소년이 안전하게 안심하고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책에 대한 기본적인 방침
 - ② 인터넷의 적절한 이용에 관한 교육 및 계발(啓發)활동의 추진에 관련한 시책에 관한 사항
 - ③ 청소년유해정보필터링 소프트웨어의 성능향상 및 이용보급 등에 관련한 시책 에 관한 사항
 - ④ 청소년의 인터넷의 적절한 이용에 관 한 활동을 시행하는 민간단체 등의 지원, 그 외 청소년이 안전하게 안심하고 인터 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책에 관한 중요사항

Ⅳ. 인터넷의 적절한 이용에 관한 교육 및 계발(啓發)활동의 추진 등

1 인터넷의 적절한 이용에 관한 교육의 추진 등

- (1)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학교교육, 사회 교육 및 가정교육에 있어서 인터넷의 적 절한 이용에 관한 교육의 추진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한다.
- (2)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청소년이 인터넷 을 적절히 활용하는 능력을 습득하기 위 한 효과적인 방법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 하기 위해, 연구의 지원, 정보의 수집 및 제공, 그 외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는 것 으로 한다.

2 가정에서의 청소년유해정보 필터링소프트웨 어의 이용보급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가정에서의 청소년유 해정보 필터링소프트웨어의 이용보급을 도모하 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한다.

3. 인터넷의 적절한 이용에 관한 홍보계발

1, 2 외에,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인터넷의 적절한 이용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홍보, 그 외 계발활동을 시행하도록 한다.

4. 관계자의 노력의무

관계사업자 등은 사업의 특성에 맞추어 인터

넷을 이용하는 때에 청소년이 인터넷을 적절히 활용하는 능력의 습득을 위한 학습기회의 제공, 청소년유해정보 필터링소프트웨어의 이용보급 을 위한 활동, 그 외 계발활동을 시행하도록 노 력하다.

V. 청소년유해정보필터링서비스의 제공 의무 등

1 휴대ISP의 청소년유해정보 필터링서비스의 제공의무

(1) 휴대ISP의 의무

계약의 상대방 또는 휴대전화단말기의 사용 자가 청소년인 경우에는 청소년유해정보 필터 링서비스의 이용을 조건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야만 한다. 다만, 청소년의 보호자가 청소년유해 정보필터링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다는 취지 의 신청을 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2) 보호자의 의무

청소년의 사용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 는 경우에는 휴대ISP에 대해서 그 취지를 말해 야하다.

2. ISP의 의무

인터넷접속서비스의 제공을 받는 자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청소년유해정보 필터링 소프트웨어 또는 청소년유해 정보필터링서비스 를 제공해야만 한다.

3. PC메이커 등의 의무

Preinstall,³⁾ 그 외 청소년유해정보 필터링소 프트웨어 또는 청소년유해정보 필터링서비스의 이용을 쉽게 하는 조치를 마련한 후에, PC 등을 판매해야 한다.

4. 청소년유해정보 필터링소프트웨어의 개발사 업자 및 청소년유해정보 필터링서비스의 제 공사업자의 노력의무

- (1) 청소년유해정보에서 열람이 제한되지 않 은 것을 가능한 한 적게 하는 것과 함께 다음의 사항을 배려해서 청소년유해정보 필터링소프트웨어를 개발 또는 청소년유 해정보필터링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 하다.
 - ① 열람의 제한을 하는 정보를 청소년의 발달단계 및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서 세 밀하게 설정할 수 있도록 한다.
 - ② 열람의 제한을 할 필요가 없는 정보에 대해서 열람의 제한이 가해지는 것을 가 능한 한 줄이도록 한다.
- (2)(1)에 규정된 것 외에 청소년유해정보 필



3) 판매하는 컴퓨터에 사전에 소프트웨어를 설치해 두는 것.



터링소프트웨어 또는 청소년유해정보 필 터링서비스의 성능 및 편리성향상에 노력 해야만 한다.

5 유해정보의 청소년에 의한 열람의 방지조 치등

(1) 청소년열람방지조치 등

- ① 특정서버관리자는 청소년유해정보가 발신되고 있는 것을 안 때에는 청소년이 열람할 수 없게 하기 위한 조치(이하 청소 년열람방지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해야만 하다.
- ② 특정서버관리자는 청소년열람방지조 치를 위한 때에는 당해조치에 관한 기록 을 작성하고, 이것을 보전하도록 노력해 야만 하다.

(2) 연락접수체제의 정비

특정서버관리자는 청소년유해정보의 연락접 수체제를 정비하도록 노력해야만 한다.

VI. 인터넷의 적절한 이용에 관한 활동을 시행하는 민간단체 등

1. 필터링 추진기관

다음의 업무를 시행하는 자는 총리대신 및 경 제산업대신의 등록을 받을 수 있다.

(1) 청소년유해정보 필터링소프트웨어 및 청

- 소년유해정보필터링서비스에 관한 조사 연구와 그 보급 및 계발
- (2) 청소년유해정보 필터링소프트웨어의 기 술개발의 추진

2 민간간체 등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다음의 민간단체 또 는 사업자에 대해서 필요한 지원에 노력하도록 하다.

- (1) 필터링추진기관
- (2) 청소년유해정보 필터링소프트웨어의 성 능에 관한 지침의 작성을 시행하는 민간 단체
- (3) 청소년유해정보 필터링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자 및 청소년유해정보 필터링서비스 제공사업자
- (4) 청소년이 인터넷을 적절히 활용하는 능력을 습득하기 위한 활동을 시행하는 민간단체
- (5) 청소년유해정보에 관련한 정보를 수리(受 理)하고, 특정서버관리자에 대해서 조치 를 취하도록 요청하는 활동을 시행하는 민간단체
- (6) 청소년유해정보 필터링소프트웨어에 의 해서 열람을 제한할 필요가 없는 것에 관 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것을 청소년유해 정보 필터링소프트웨어 개발사업자, 그 외의 관계자에게 제공하는 활동을 시행하 는 민간단체
- (7) 청소년열람방지조치, 청소년에 의한 열람

의 제한하는 정보의 갱신, 그 외 청소년이 안전하게 한심하고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의 정비에 관해서 취해지는 조 치에 관한 민사상의 분쟁에 대해서 활동 하는 ADR기관

(8) 그 외 관계하는 활동을 시행하는 민간단체

Ⅶ. 시행기일 등

1.시행기일

이 법률은 공포일로부터 1년을 넘지 않는 범 위 내에서 政令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 로 한다.

2. 검토

- (1) 정부는 이 법률의 시행 후, 3년 이내에 이 법률의 시행상황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그 결과에 근거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 는 것으로 한다.
- (2) 인터넷을 이용해서 공중의 열람에 제공하 는 것이 범죄 또는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가 되는 정보에 대해서, 서버관리자 가 그 정보가 공중에게 열람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 경우에, 당해서버관리자가 그 정보의 발신자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 해서 이 법률의 시행 후, 빠른 시일 내에 검토를 해서, 그 결과에 근거한 조치를 취 하도록 한다.

VⅢ. 해당법률에 대한 문제점 및 비판

해당법률에 대해서 제기된 문제점 및 비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인터넷 전체의 자유를 저하시키고, 그것에 동반해서 정보량도 격감시킬 우려가 있다.
- 유해한가 아닌가의 판단을 내리는 것이 공 적기관인지 민간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규제는 독재적인 판단 및 주관적인 평가가 될 위험이 있다.
- 위법하다고 단언할 수 없는(유해하다고 판 단되는)사이트도 삭제할 의무에 따르기 때 문에, 정보에 따라서 인터넷이용자의 알권 리를 침해할 수도 있다.
- 국가기관 이외의 기관이 유해성을 판단한다 고 해도, 국가가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검열 이며, 일본헌법에 규정된 "표현ㆍ이상의 자 유"에 위반한다.
- 단계적으로 확대된다면 정부비판만으로도 체포될 가능성이 있고, 국민의 권리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
- 예술로써의 누드나 회화도 규제될 우려가 있 고, 문화와 예술에 현저히 악영향을 미친다.
- Microsoft · Windows · Macintosh에는 이 미 필터링기능이 내재되어 있다.

김경석

(일본 주재 외국법제조사원)